



2026년도

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

인턴형 프로그램



정부가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
검증된 청년 인재를 부담없이 만나보세요!

안 내 자 료

A.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참여기업	전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 (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법인, 일반기업 등)
참여자	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,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
참여유형	인턴생 * 수련생 신분으로 4대보험 가입 X
참여기간	8주
근무시간	1주 25시간
지원 규모	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0% 지원 가능
제한 요건	휴일, 야간, 연장, 대체 근무 불가.
지원금 * 일경험 시작일 기준 4주 단위로 지급 / 출석을 따라 감액 지급	
참여자	90% 이상 출석 → 1인당 주 최대 37.5만원 >> 4주 최대 150만원 (출석을 90% 미만일 경우 감액 지급)
기업	기업 참여 청년 1인당 주 최대 5만원 → 4주 최대 20만원
멘토	참여 청년 1인당 → 주 최대 3.75만원 >> 4주 최대 136,800원 (원천징수기타소득 8.8% 제외 금액) * 참여기업의 임원급 이상(사외 이사 포함)은 멘토 선임 불가 * 멘토수당은 원천징수 기타소득 8.8% 제외하고 지급 * 멘토수당은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(계좌이체)

B. 사업 내용

- 사업명 :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
- 사업 내용 : 만 15세 ~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및 재학생에게 관심 직무에 대한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통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

구분	주요 내용	
	참여자	참여기업
지원 대상	만 15세 ~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(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는 미취업으로 간주)	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 사회적 기업, NGO, 공공기관 등
지원 내용	- 사전직무교육 수당 2만원 - 인턴십 1인당 37.5만원 → 4주 최대 150만원 * 출석률 따라 감액 지급	- 기업 주 5만원 → 4주 최대 20만원 - 멘토 주 3.75만원 → 4주 최대 136,800원 (원천징수기타소득세액 8.8% 제외 금액) * 출석률 따라 감액 지급
운영기간	8주, 주 25시간 운영 원칙 * 평일(월-금) 오전 9시 ~ 오후 6시, 주 25시간 원칙 ex. 월-금 일별 5시간씩 → 총 25시간 화/수/목 6시간, 금 7시간 → 총 25시간 * 대체 근무, 야근 등 불가	
참여자 제한 요건 확인	①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인 자 → 고용보험 취득(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는 미취업으로 간주) ② 신청일 현재 사업등록 중인 자 → 프로그램 참여 전 참여 제한 사유 해소 되는 경우 참여 가능 * 휴업/폐업/전년도 사업 소득이 1,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(증빙 서류 필수) ③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또는 형제, 자매가 참여 기업 사업주(대표자)인 자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(국가·지자체) 일경험 지원 사업제 참여한 자 ⑤ 단순 번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자(기업탐방형 제외) ⑥ 지원금 중복 지원 받는 중인 자 예)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,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점프업 포인트, 실업급여 등	

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

프로그램
신청



프로그램 승인
→ 참여자 모집



참여자 선발



사전직무교육



프로그램
개시



지원금
신청

[별첨] 직무분야 사전 분류(안)

직무 구분	세부 직무(예시)
경영·사무	기획, 인사, 행정, 총무, 노무 등
금융·회계	금융, 회계, 재무, 보험 등
영업·해외영업	제품·서비스 영업, 영업관리, 온라인 판매, 해외영업 등
광고·마케팅	마케팅, 홍보, 광고 제작, 영상 콘텐츠 기획 등
IT	컴퓨터시스템 전문가, 웹·소프트웨어 개발자, 데이터 전문가 등
연구·R&D	경제, 인문·자연과학, 화학, 전기, 원자력, 제약, 바이오, 식품공학 등
생산·제조	생산·품질관리, 생산, 제조, 전기, 설비, 조립, 가공 등
공공행정	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
기타	보건·의료, 디자인, 미디어, 미용, 음식,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/ 기타 신설 요청 직무 분야

※ 단순 노무, 안전상 우려가 있는 현장직무 등의 직무 분야는 제외